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성 북 구
(홍보전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379
----------	-----

제출년월 : 2024년 11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출자·출연기관 중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3조)
- 다.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안 제4조)
- 라.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안 제5조)
- 마.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련 구청장의 지도·감독(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협의사항 : 기획예산과 혁신경영팀
- 라. 기 타

1) 입법예고 결과

- 기 간 : 2024. 9. 19.(목) ~ 10. 10.(목) (21일간)
- 방 법 : 성북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결과

-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대상
- 아동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 공격·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

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3. 사이버보안 교육
4. 자체 진단·점검
5. 보안관계
6. 사고대응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6조(지도·감독)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 ②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행정문화국 홍보전산과장 최 혜 숙